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2190
--------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설치비의 지원, 지원신청,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사업자와 협약체결, 지도·감독, 사업자에 대한 제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마.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8조~1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가스 사업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사용압력으로 감압 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 및 정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의 지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허가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설치사업에 한한다.

1. 가스본관 설치
2. 정압기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한 경우에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방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임직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 가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해당 안
건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
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와 협약체결) 군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원활
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관계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 ·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 :)	
공 사 명			
공급 세대수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대구광역시달성군 공사종점 : 대구광역시달성군	
배 관 연 장		m	
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회사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공 사 위 치					배관길이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단독주택용 : 세대			
				기 타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신 청 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 총 공 사 비 : • 사업자 부담 : • 보 조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구간별 투자금액 내역 1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⑪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